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8,131,283	13,143,938
일반회계	364,262,442	10,927,873
특별회계	73,868,841	2,216,065
공기업특별회계	20,746,768	622,403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20,746,768	622,403
기타특별회계	53,122,073	1,593,662
의료급여기금운영	1,509,620	45,28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65,876	31,976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43,497	7,305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5,140,444	154,213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6,237,672	487,130
농공지구조성사업	1,741,653	52,250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27,183,311	815,49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941,05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700,44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